

상품안내장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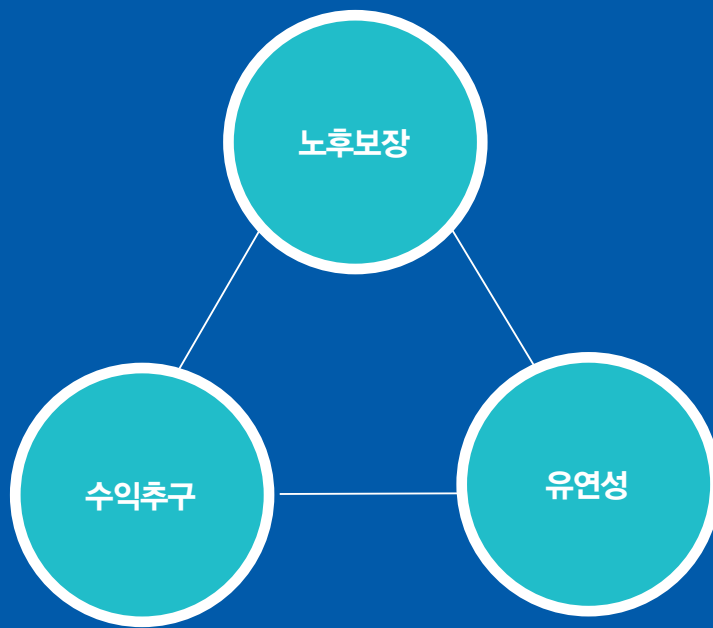


TM



Prudential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01. 장기투자과 간접투자의 장점 결합

- 장기투자과 간접투자의 장점을 결합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이익을 배분
- 투자 기능과 연금 기능을 모두 가진 실적배당형 연금상품

02. 노후 계획에 따른 맞춤형 연금 설계

- 100세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을 통해 평균 수명 연장에 효과적 대응
- 노후 계획에 맞춰 자유설계노후자금개시나이 단축 및 연장 가능
- 적립형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상황에 맞는 연금 수령 가능

03. 조기연금개시 가능 제공

- 적립형의 경우,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시 최소거치기간이내의 연령으로 연금개시나이 단축 가능

04. Step-up 기능을 통해 자유설계 노후자금 10년간 보증 지급

- 투자기간동안 발생한 수익을 보증하는 Step-up 기능을 통해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최대 2배까지 최저보증수준 상승 가능
-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시 적립금과 Step-up 보증금액 중 큰 금액의 8%를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10년간 보증 지급

※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35%/12와 보험료총액의 0.2%/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
- 보험료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보험료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 보험료총액대비 보증비용은 거치형의 경우 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적립형의 경우 납입기간(최대 7년) 동안 부과합니다.

05. 유연한 보험료 납입과 계약자적립금 인출 가능

- 경제상황 및 자금 계획에 따라 보험료 추가납입, 납입일시중지 및 납입중지 가능
 - 계약자적립금 인출을 통해 필요자금으로 활용 (연 12회 한도)
- ※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를 계약관리비용으로 부과합니다.
※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06.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01.

준비가 빠를수록 노후가 더욱 풍요로워 집니다

노후 필요자금

50세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노후생활비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013

구분	최소 노후생활비	적정 노후생활비
단신기준	연 1,086만원(월 90.5만원)	연 1,554만원(월 129.5만원)
부부기준	연 1,755.6만원(월 146.3만원)	연 2,464.8만원(월 205.4만원)

가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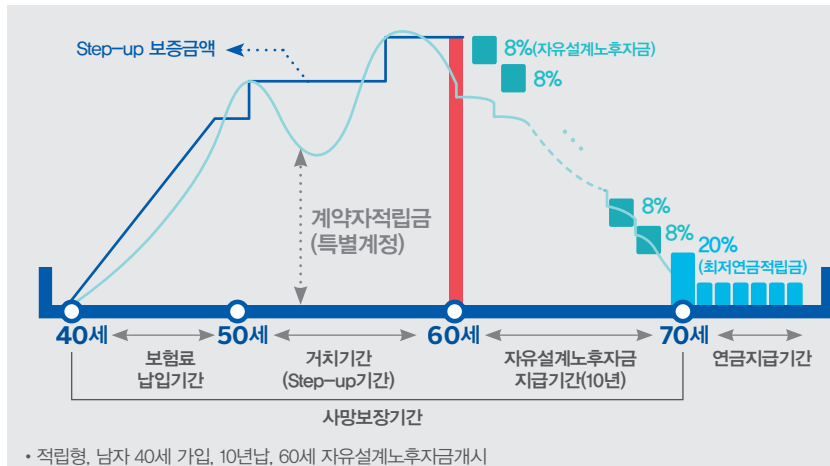
- **보험종류** :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거치형/적립형
- **보험기간** : 사망보장기간(보험계약일부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 종료일까지)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일 이후 10년)
연금지급기간(연금개시일부터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보험가입조건

보험종목	거치형	적립형
보험료 납입기간	일시납	5/7/10/15/20년납,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나이-7)세납
가입나이	만15세~63세	만15세~60세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납입보험료 한도	1,000만원 이상	기본보험료(1구좌당) • 7년납 미만 - 30~100만원 • 7년납 이상 10년납 미만 - 만15세~55세 : 20~100만원, 56세이상 : 30~100만원 • 10년납 이상 - 만15세~55세 : 15~100만원, 56세이상 : 30~100만원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제외) 총액의 200% 이내
자유설계노후자금 지급개시나이	35세~70세	
연금지급개시나이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나이+10세	

* 납입완료 후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까지 최소 7년의 거치기간이 있어야 하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나이-7)세납의 납입기간은 5년납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5년납의 경우에는 최소거치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가입예시



연금지급기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생존시 평생지급 정액형: 10/15/20년, 100세, 3% 체증형: 10/20년 보증지급

확정연금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지급 (5/10/15/20년)

생존시 연금계약적립액의 이자지급

+

상속연금 사망시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 지급

노후설계자금(적립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동안 자유로운 자금인출

• 적립형, 남자 40세 가입, 10년납, 60세 자유설계노후자금개시

* 자유설계노후자금 :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금과 Step-up 보증금액 중 큰 금액의 8%를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10년간 지급하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 중 매 보험년도 초에 자유설계노후자금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

* 최저연금적립금 : 연금지급개시시 Step-up 보증금액의 20%를 최저보증

지급기준

사망보장기간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액	
		거치형	적립형(1구좌기준)
사망보험금	사망보장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 + 계약자적립금	600만원 + 계약자적립금

- ※ 단, 고의적 사고 및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합니다. 단,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 기간에는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자유설계노후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며, 자유설계노후자금의 지급으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0보다 작게 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0으로 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07%/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액
자유설계노후자금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10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과 Step-up 보증금액 중 큰 금액의 8%

- ※ 자유설계노후자금은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 중 매 보험년도 초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자동으로 이체되며, 이체된 자유설계노후자금은 연금개시시점까지 인출금액 및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합니다(자유설계적립금). 보험수익자는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자유설계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Step-up 보증금액
 -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증기준액을 말합니다. 단, Step-up 보증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배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평가일이란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 완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시점에 해당하는 연계약해당일까지의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 보증기준액 고정기간이란 해당 평가일부터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평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보증기준액이란 기본보험료의 납입기간 완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 평가일마다 재산출하여 보증기준액 고정기간 동안 변동없이 적용하는 금액으로, 해당 평가일 직전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적립금 포함)을 말합니다. 단, 보증기준액은 해당 평가일 직전 Step-up 보증금액의 100%를 최저한도로 하고, 120%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 ※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35%/12와 보험료총액의 0.2%/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보험료총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및 잔여 납입기간 중 납입할 기본보험료 합계를 말합니다.
 - 보험료총액대비 보증비용은 거치형의 경우 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적립형의 경우 납입기간(최대 7년) 동안 부과합니다.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액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보증기간 : 정액형 - 10/15/20년, 100세, 3% 체증형 - 10/20년)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 (단, 보증기간까지 보증지급)
확정연금 (연금지급기간 : 5/10/15/20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계산한 연금연액
상속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연금수익자에게 지급)
노후설계자금 (적립형에 한함)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연금적립금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 ※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 종료후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과 Step-up 보증금액의 20%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적립형의 경우 최대 2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연금지급형태별 구성비율은 10%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3% 체증형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체증기간은 보증기간(10/20년)과 동일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적립형)

계약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 총액의 200% 이내로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음)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납입한도가 늘어나며,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를 계약관리비용으로 부과합니다.

계약일 이후 5년 경과 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1회 신청당 12개월을 최고한도로 최대 3회 신청가능)

계약일 이후 10년(납입일시중지를 한 경우 10년+납입일시중지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나이의 기간이 최소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에서 최소거치기간이 경과한 직후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로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충비용,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충비용,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하며,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됩니다.

※ 납입중지시 계약자적립금이 납입중지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10년 이내에는 인출금 총액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시, 인출후 계약자적립금이 거치형은 일시납보험료의 30% 이상, 적립형은 1구좌당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추가적립금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펀드선택 및 변경

기본보험료 납입펀드를 채권형 펀드를 포함하여 3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기안정채권형 펀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펀드별 기본보험료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이하인 경우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70% 이상으로 하며,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50% 이상으로 합니다.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 및 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최대 25%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 투입비율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이하인 경우: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투입비율이 70% 이상
2.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투입비율이 50% 이상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펀드 적립금 이전시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 중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펀드변경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최대 25%까지 가능하며,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이하인 경우 :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이 70% 이상
2.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 :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이 50% 이상

펀드비율 자동조정

평가일에 보증기준액이 직전 보증기준액 보다 증가하고 단기안정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계약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이 25%가 되도록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자동 조정됩니다. 그밖에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자동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이하이고 평가일에 보증기준액이 직전 보증기준액 보다 증가한 경우
 - 평가일의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의 합계가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이 70%가 되도록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자동 조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25%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가입시부터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 직전일까지의 기간이 12년 초과이고 평가일에 보증기준액이 직전 보증기준액 보다 증가한 경우
 - 평가일의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의 합계가 펀드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 중 채권형 및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합산 비율이 50%가 되도록 채권형 계약자적립금이 자동 조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비율은 25%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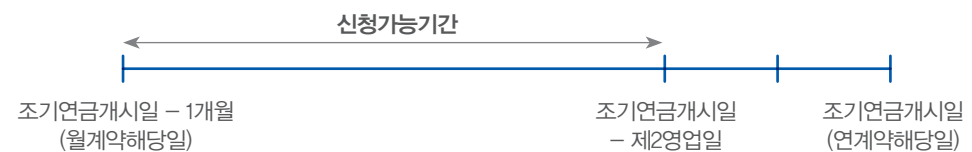
조기연금개시에
관한 사항

적립형의 경우, 아래의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계약에 한해 최소거치기간내의 연령으로 연금개시나이의 단축이 가능합니다(이하 '조기연금개시'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일 직후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에 연금이 개시되며 신청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1) 신청일 직후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조기연금개시시점)이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계약
- (2) 조기연금개시시점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3) 신청시점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이상인 계약

신청시기 : 「조기연금개시시점 1개월전 월계약해당일」부터 「조기연금개시시점 - 제2영업일」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유설계노후자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조기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기연금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합니다.

조기연금개시 신청시, 계약자적립금은 신청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액 채권형 펀드로 이전하여 연금개시전까지 운용됩니다.

조기연금개시 신청시, Step-up 보증금액 및 최저연금적립금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기연금개시 신청시 자유설계노후자금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누계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특별계정수익률								
			-1.00%가정(순수익률:-1.42%)			2.50%가정(순수익률:2.08%)			3.75%가정(순수익률:3.33%)		
			사망 보험금	해지 환급금	환급률	사망 보험금	해지 환급금	환급률	사망 보험금	해지 환급금	환급률
1년	360	330	920	273	75%	926	279	77%	929	281	78%
3년	1,080	991	1,548	916	84%	1,600	969	89%	1,619	988	91%
5년	1,800	1,651	2,158	1,542	85%	2,302	1,686	93%	2,357	1,741	96%
10년	3,600	3,318	3,645	3,045	84%	4,226	3,626	100%	4,464	3,864	107%
15년	3,600	3,287	3,600	2,764	76%	4,526	3,926	109%	5,047	4,447	123%
20년	3,600	3,252	3,600	2,502	69%	4,849	4,249	118%	5,720	5,120	142%

- ※ 기준 : 적립형,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월납, 10년납, 60세 자유설계노후자금개시, 채권형펀드 100%, 단위 : 만원(천단위 이하 절사)
-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후 특별계정(펀드)으로 투입운용되고, 특별계정(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반영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증비용 등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보증비용이 차감(단, 자유설계노후자금 보증비용은 계약자적립금 기준 보증비용만 반영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 특별계정(펀드) 투자수익률은 펀드의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계산되며, 특별계정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매일 차감되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연금지급개시전 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습니다.
- ※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전 기간 중 중도해지시 Step-up 보증금액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 ※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 이후의 자유설계노후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자유설계노후자금

특별계정수익률	-1.00%가정 (순수익률:-1.42%)	2.50%가정 (순수익률:2.08%)	3.75%가정 (순수익률:3.33%)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 개시시 계약자 적립금과 Step-up 보증금액 중 큰 금액	3,600	4,249	5,120
자유설계노후자금 (10년간 매년 지급)	288	339	409

- ※ 기준 : 적립형,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월납, 10년납, 60세 자유설계노후자금개시, 채권형펀드 100%, 단위 : 만원(천단위 이하 절사)
- ※ 자유설계노후자금 : 자유설계노후자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과 Step-up 보증금액 중 큰 금액의 8%
-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연액 예시

특별계정수익률		-1.00%가정(순수익률:-1.42%)			2.50%가정(순수익률:2.08%)			3.75%가정(순수익률:3.33%)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720			1,208			1,934		
예시이율		1.00%	2.50%	2.55%	1.00%	2.50%	2.55%	1.00%	2.50%	2.55%
보증기간부 중신연금 (정액형)	10년 보증	32	38	38	54	64	65	86	103	104
	15년 보증	31	37	38	53	63	63	85	101	102
	20년 보증	30	36	36	51	61	61	82	98	98
100세 보증	26	32	32	44	54	54	70	86	87	
보증기간부 중신연금 (3% 체증형)	10년 보증	26	32	32	44	53	54	71	86	86
	20년 보증	22	27	27	38	46	46	61	74	75
확정연금	5년 확정	145	149	149	244	251	251	390	402	402
	10년 확정	74	79	79	125	133	133	200	213	213
	15년 확정	50	56	56	85	94	94	136	150	151
	20년 확정	39	44	44	65	74	75	105	119	120
상속연금 (상속준비금)	7	17	17	11	29	29	18	46	47	
	(712)	(702)	(702)	(1,196)	(1,179)	(1,178)	(1,915)	(1,887)	(1,886)	

※ 기준: 적립형,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월납, 10년납, 60세 자유설계노후자금개시, 채권형펀드 100%, 단위: 만원(천단위 이하 절사)
 ※ 상기 예시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연금연액은 최저보증이율 1.0%, 평균공시이율 2.5%(단, 2018년 1월 현재의 공시이율을 상한으로 함) 및 2018년 1월 현재의 공시이율 2.55%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금액입니다. 실제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시이율 변동시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 이 보험의 연금지급기간 동안의 적립이율은 연단위 계약해당일이 포함된 해당월의 1일에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연복리 1.0% 최저보증)로 하여 매 1년간 확정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한 금액은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일 때의 금액입니다.
 ※ 보증기간부 중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New 100세 플러스
변액연금으로의 변경

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전까지 무배당 New 100세 플러스 변액연금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시 해당 상품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변경 후에는 변경된 상품의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부가가능 특약

• 무배당 멀티정기특약(무해지환급형/표준형)

※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무배당 멀티정기특약(무해지환급형/표준형)에 한하여 무배당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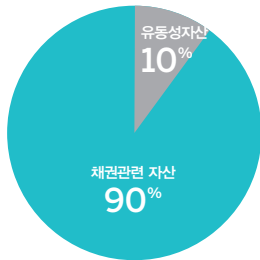
믿고 맡길 수 있는
푸르덴셜이 함께합니다.

푸르덴셜생명의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대상을 다각화하여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다양한 펀드를 제공합니다. 모든 펀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엄격하게 설정되며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됩니다

채권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467%

운영보수	0.332%
투자일임보수	0.1%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2%



단기안정채권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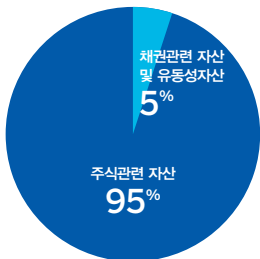
운영보수	0.262%
투자일임보수	0.05%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2%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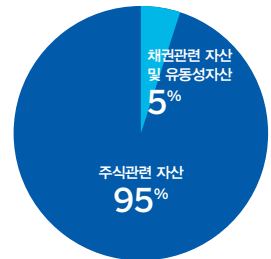
운영보수	0.432%
투자일임보수	0.15%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2%



롱텀밸류주식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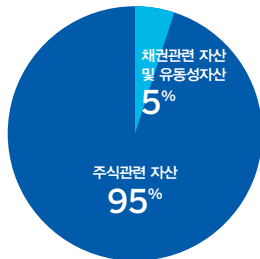
운영보수	0.452%
투자일임보수	0.28%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2%



액티브주식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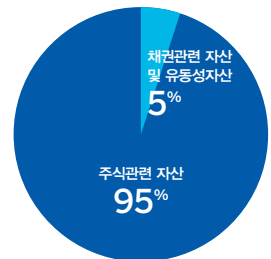
운영보수	0.502%
투자일임보수	0.28%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2%



배당주식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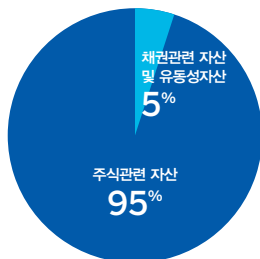
운영보수	0.502%
투자일임보수	0.23%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2%



스마트주식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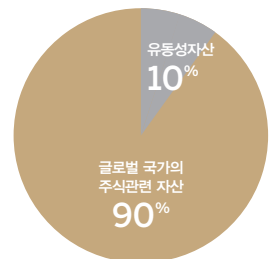
운영보수	0.502%
투자일임보수	0.22%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2%



글로벌주식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689%

운영보수	0.454%
투자일임보수	0.2%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2%



* 기준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부과 : 특별계정적립금의 "특별계정 운용보수"/365를 매일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상기 펀드 운용시 자산의 일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펀드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상기 펀드 운용시 자산의 일부를 해외에 투자할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주식관련 자산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 채권관련 자산 :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 유동성자산 : CD, 기업어음, MMF, 예금 및 기타 유동성 자산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173호(2018.1.15)	
관리번호	준법감시인확인필-SM-1801003-1-4
인쇄일자	2018. 02. 01

알아두실 사항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의 판매자격

-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모집 종사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준가격 및 순자산가치 확인

-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는 푸르덴셜 홈페이지 변액보험공시실(www.prudential.co.kr)이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상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 > 펀드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기준계약 해지 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청약철회 청구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 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 청구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자동납부 제도 안내

- 보험료 자동납부란 별도의 고지서 발행 없이 보험료 납부자의 예금구좌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인출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려면 당사 또는 거래 은행의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당사 CS Center(1588-3374, 080-928-3838)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일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을 최저사망보험금, 자유설계노후자금, 최저연금적립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